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1
----------	-----

2022년 9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원태 의원 외 18명
- 나. 제안일 : 2022년 8월 29일
- 다. 회부일 : 2022년 9월 2일
- 라. 상정일 :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9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2019.9.26.)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왔음.
- 2022.1.1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가지게 되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대안 교육사업을 간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 대상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까지 확대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2.9.7. ~ 9.1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대안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의 대상을 현행 ‘학교와 학생 및 유치원과 유치원생’에서 ‘대안교육기관과 학생’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 <u>학생</u>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 <u>학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u>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 교육경비 보조

- 교육경비 보조는 법령에서 정한 교육청 전출금(법정전출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보조적·보충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임. 서울시는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각급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 운영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최근 5년간 교육경비 보조 최종예산 현황 〉

(단위:천원)

2022	2021	2020	2019	2018
51,984,432	54,742,029	67,299,072	53,300,000	28,268,189

출처 : 서울재정포털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의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목 적 :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 지원대상 : 유치원과 유치원생, 각급 학교와 학생 등
- 재 원 :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 일반교육경비(90%), 특별교육경비(10%)
- 추진방법 : 조례상 전출금으로 편성, 교육청에 전출하여 세부 사업별로 추진

〈 2022년 교육경비 보조 사업 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21	2022	증 감	추진목표
계	54,376	51,984	△2,392	
일반교육경비	36,451	29,706	△6,745	
1. 학교체육관 건립	600	2,400	1,800	1개교
2.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700	7,300	3,600	24개교
3. 학교CCTV 교체 지원	1,535	1,535	0	200개교
4.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200	1,346	146	8개교
5.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 특별교실 구축	720	1,080	360	18개교
6. 미래형 교실 구축	940	940	0	20개교
7. 학교 학습공간 시설개선 지원	800	2,000	1,200	4개교
8.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600	600	0	80개교
9.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350	700	350	22개소
10.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550	660	110	1개원
11. 학교급식 노후조리기구 현대화 사업	1,000	4,000	3,000	80개교
12.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600	420	△180	2,600명
13.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2,100	2,100	0	500개교
14. 지역사회 결합형 학교 지원	1,000	1,125	125	77개교
15.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진흥 캠페인	500	500	0	60개교
16. [신규]예체·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멘토링 지원	0	1,000	1,000	50개교
17. [신규]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0	2,000	2,000	6개원
중고교 입학준비금	12,488	12,864	376	142,000명
[신규]초등학교 입학준비금	0	4,216	4,216	69,800명
특별교육경비	5,437	5,198	△239	

- 서울특별시 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법인·단체·시설 등은 대안학교 4개소와 대안교육기관 127개소 등 총 131개소가 있으며, 이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이하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83개소 중 교육감에게 등록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내 대안교육기관 현황 〉

(2022.8.19. 기준)

총 131개소					
교육청 지원(48개소)		서울시 지원(57개소)			미지원(26개소)
인가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신고형 대안교육기관	미인가·미신고·미등록 기관
4	44	17	32	8	26

※ **대안학교** : 교육감의 인가를 얻은 대안교육기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 **대안교육기관**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 학교 등에 재학생 중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이 원 소속학교에 적을 그대로 두고, 위탁교육기관으로 등교하는 시스템으로 위탁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재적학교의 졸업자격을 수여하는 제도.

※ **지원형 대안교육기관** :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전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왔던 대안교육기관.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과정이 우수하고, 적절한 교육시설을 갖추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곳으로 서울특별시가 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모델에 근접한 기관.

※ 신고형 대안교육기관 :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비해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의 부분에서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대안교육기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청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가 먼저 제정 후 법률이 제정되어, 법령과 상이한 조례 규정, 법조문 해석의 차이로 인한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간 갈등과 대안교육기관의 혼란을 해소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의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식 변경이 적절한지 여부, 교육경비 보조로 편성이 적절한지 여부, 교육경비 보조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첫째, 조례 제정 후 법령 제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식의 변경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간 갈등과 여건변화 및 사무주체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갈등 및 여건 변화

·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선정·지원(지원형 대안교육기관)해 왔음.

- 2019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서울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하 「대안교육기관조례」)을 제정(2019.9.26.)하고, 동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인건비, 프로그램비, 임차금, 입학준비금, 급식비 등을 지원해 왔음.
- 시장에게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토록하는 「대안교육기관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교육감에게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공포(2021.1.13.)·시행(2022.1.13.)되어,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의 혼란이 발생하였음.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만을 지원하고,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는 ‘교육감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서울시의 차별적 지원은 법률 제정 목적과 효과를 저감시키고, 실질적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로 지속되었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조례」를 ‘서울특별시에 신고’ 및 ‘교육감에게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2021.12.22)하였음.
- 서울특별시는 「대안교육기관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직접적인 지원은 법령위반이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정한 「대안교육기관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요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를 재의결(2022.02.21)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신청(대법원2022추5088_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하여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은 서로 ‘대안교육기관’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 또는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 효율적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관련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서울특별시는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간 협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 관련 서울시-교육청 협의 경과 〉

- 市-교육청 실무진 협의 ('21. 3월 ~ '22. 4월, 6회)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관련 市-교육청 역할 변화 관련 : '21.3.17.
 -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에 대한 재정부담 관련 : '21.5.18.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이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 '21.6.9.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이후 대안교육기관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 : '21.6.30.
 - 교육청 등록제 / 서울시 신고제 향후 운영 방향 등 : '21.7.23.
 -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교육청 등록 기피현상 발생 우려 : '22.4.5.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를 통한 협의 ('21. 6월 ~ '22. 4월, 총 5회)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청 담당 과장 참석
 - ▶ '21년 2회 ('21. 6월, 11월), '22년 3회 ('22. 1월, 3월, 4월) 참석
 -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개선방안, 교육청 등록제 추진방안 등
-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통한 협의 ('22. 6 ~ 7월, 총 2회)
 -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市 청소년정책과장 참석
 - ▶ '22년 2회 ('22. 6월, 7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교육청은 그동안 서울시민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교육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전담하여 왔음.
- 본 교육경비 보조는 교육기관 또는 학교 내 교육활동, 학교 내 교육사무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한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가 교육청 소관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이러한 교육청의 입장 변화는 교육청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변화가 아닌 법령(「대안교육기관법」) 제정에 따른 수동적인 변화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호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구체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둘째, 본 조례(「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위 법령들은 교육경비 보조의 대상을 ‘학교’로 특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학교가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장관고시 2022-2호, 2022.1.7.공포, 2022.3.1.시행)에서는 교육과정을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교육과정’을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석(법제처 10-0442 해석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경비의 지원대상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교육경비 보조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짐.

※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요건을 각각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법제처 2016.5.18, 회신 16-0092 해석례)는 해석례를 제시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9항은 상위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학교만을 교육경비 보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구속되지 않으며, 동조 제8항과 구분되는 요건으로 교육경비 보조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9항은 제8항에서 규정한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에 구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보충적·보조적 지원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에 대한 정책적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경비 보조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경비 보조는 ‘교육경비 보조 교부 제한규정(「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9항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대안교육기관법」제14조는 대안교육기관 내에 학부모·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금의 운영 계획과 집행을 미리 논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여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셋째, 안정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의 탄력성과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의 가변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① 교육경비보조금의 탄력성 측면

- 조례에 근거를 두어 ‘조례상전출금’이라고도 불리는 교육경비 보조는 ‘보통세 1000분의 6 이내’의 규모로 전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 교육경비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기반으로 하여, 법정전출금의 보조적·보충적인 역할로 설계되어 편성의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고,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서울특별시 여건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를 대규모 감액 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서울시는 조례상 법령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교육청은 교육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추진할 수 없게 되는바, 안정적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조례상 전출금의 하한액

서울특별시의회는 안정적 교육경비 보조를 위해 현행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는 교육경비 보조의 하한액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의결했으나, 서울특별시는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 후 대법원 제소하였고,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로 판결하여, 하한액을 규정하여 안정적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하려던 서울특별시의회는 패소한바 있음.

- 교육경비 보조는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대안 강구 등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②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의 가변성

- 대안교육기관 지원방법을 현행 서울시의 직접지원에서 교육청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서울특별시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여, 서울시-교육청 간 갈등, 서울시-대안교육기관 간 혼란을 초래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효과 저해 등 문제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 등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의 관계를 경색국면으로 유도한바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불가’ 방침을 단기간에 변경하여, 직접지원은 안되지만, 간접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서울시의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대시민 신뢰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도 교육청 소관의 사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갈등, 대안교육기관의 혼란 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보조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 신청)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관리)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

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 : 시 재정기획관 및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으로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 관련 담당과장(담당관)과 교육청의 예산 관련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시·교육청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담당관) 및 제17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규모와 보조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